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735호 2023. 3. 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0호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2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4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 1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 6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9호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0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1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24호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
수수료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3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40호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1,71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453억원)보다 3,266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59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87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1.9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9.60%입니다.
-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2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청사,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인해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늘어나는 세출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open_info/finance/local.jsp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홍지은(032-560-405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42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건 명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2. 내 용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
3. 목 적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를 이행하고, 협의회 규약 변경 사항(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담당관(☎032-560-4042)

<붙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

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방 정 부 명
서울(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성동구
인천(2)	중구, 연수구
광주(3)	동구, 서구, 광산구
대전(2)	유성구, 대덕구
경기(7)	수원특례시, 안양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성남시
강원(3)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충북(1)	증평군
충남(4)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전북(3)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전남(1)	나주시
경북(2)	구미시, 의성군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37번길 12-13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3.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3-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246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37번길 12-13 (경서동)	20090922	원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06-1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86-2 (백석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2	인천광역시 서구 갈문2로 19 (오류동)	20121025	갈문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아라뱃길 저온물류센터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4-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25 (청라동)	20110630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사파이어존의 청색에서 착안. 청색의 네번째 도로로 부여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5 (가정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0-4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86 (연희동)	20090922	심야꽃이 많아 심야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5-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31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6-8	인천광역시 서구 이용3로 149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용'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세번째 도로	워너스 프라자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5-2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08번길 18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와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8-5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16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2-6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로 15 (금곡동)	20191223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순 우리말에서 착안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44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번지 외 15필지
- 나. 면 적 : 3,616.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 수 예 정 일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나. 준 공 예 정 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 명 칭 :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
- 나. 사무실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23번길 12-4, 상가동 204호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 내용

- 가. 조합정관 변경
- 나. 조합원 변경(매매, 상속으로 인한 변경 2인)

소관부서	주택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박성률	전화번호	032-560-4592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4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건 명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2. 내 용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
3. 목 적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를 이행하고, 협의회 규약 변경 사항(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담당관(☎032-560-4045)

<붙임>**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2022.6.21.

(제정)2016.1.2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하고 별도로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지역	지방정부명
서울(6)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북구
인천(3)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2)	광산구, *서구
대전(1)	유성구
경기(11)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양평군, 구리시, 화성시, 파주시
충남(2)	아산시, 공주시
부산(2)	연제구, 부산진구
전남(2)	여수시, 영암군
경북(1)	포항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개정이유

소송사무 처리 규칙 조항 중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고, 잘못 기재된 문구를 수정하고, 정확한 고문부문 명칭을 기재하여 소송사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어색한 표현 바로잡음(안 제7조제1항)
- 나. 잘못 기재된 문구 수정(안 제7조제2항)
- 다. 정확한 고문부문 명칭 기재(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4,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소송사무 처리 규칙 조항 중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고, 잘못 기재된 문구를 수정하고, 정확한 고문부문 명칭을 기재하여 소송사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어색한 표현 바로잡음(안 제7조제1항)
- 나. 잘못 기재된 문구 수정(안 제7조제2항)
- 다. 정확한 고문부문 명칭 기재(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를 “공무원이 대리인인 경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고문”을 “소송고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문”을 “소송고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응소 등의 소송수행 결정 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민사합의 사건은 <u>법률고문</u> 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고문</u>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 ----- <u>공무원</u> <u>이 대리인인 경우도</u> ----- -----.</p> <p>② ----- <u>소송고문</u> ----- ----- ----- ----- -----.</p> <p>③ ----- ----- ----- <u>소송고문</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명 제정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환전, 운영사항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 제2장 제4조 ~ 제11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 등 현 운영방식(전자식상품권)에 맞게 개정
 - 상품권 발행의 중층구조 명시 (시 운영방식 준용 근거)
-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안 제5장 제27조 ~ 제28조)
 - 소상공인(가맹점)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정비

- * 정책 변경에 따른 가맹점 부담 수수료 등 지원 조항 정비
- 사용자 인센티브 범위 통합 간소화
- * 경품, 쿠폰 등 부가서비스별 나열된 인센티브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560-3261,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명 제정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환전, 운영사항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

-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 제2장 제4조 ~ 제11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 등 현 운영방식(전자식상품권)에 맞게 개정
- 상품권 발행의 중층구조 명시 (시 운영방식 준용 근거)

다.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안 제5장 제27조 ~ 제28조)

- 소상공인(가맹점)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정비
 - * 정책 변경에 따른 가맹점 부담 수수료 등 지원 조항 정비
- 사용자 인센티브 범위 통합 간소화
 - * 경품, 쿠폰 등 부가서비스별 나열된 인센티브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별첨(「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인천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

- 3.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1호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연계된 별도의 서비스를 말한다.
- 4.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 5.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의 수탁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6. “중층구조”란 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발행·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쿠폰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 2.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이하 “서구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 3. 1회 충전 권면금액의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은 1만원과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권면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과 200만원 범위에서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 및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점은 구청장과 상품권 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1. 협약기간
-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제

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서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혜택플러스 가맹점 포함)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부가서비스 운영 등) 구청장은 서구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

제1735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3.03.06.(월)
력 강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중층구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 보수

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1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
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
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앙부처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4. 그 밖의 수익금 및 지원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맹점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4.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안내·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층구조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상품권 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상품권 담당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이하 “민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민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 2.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 3.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4.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 6.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 7.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

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제26조(위원의 수당) 제18조, 제25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27조(캐시백 등)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캐시백(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서구지역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의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별 캐시백 제공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이용자가 법인 및 가맹점인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 캐시백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캐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 시상금 등 지원 및 지급
 - 가. 경품추첨행사
 - 나. 퀴즈이벤트
 - 다. SNS 홍보이벤트
 - 라. 가맹점 방문이벤트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 제공
 - 가. 제공대상 : 상품권 사용자
 - 나. 제공방법 : 앱 내 쿠폰으로 제공
 - 다. 제공한도 : 5,000원 범위 내
 - 라. 제한기준 : 월 2회 이하
 3.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에게 상품권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수수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5.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품 등 세부기준(제28조제5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경품 추첨행사	연 1회	전년도 상품권 발행액의 1/10,000 범위	경품권 제공 및 추첨 (상품권 결제액 5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	캐시백 또는 부가서비스 쿠폰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품권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부가서비스 쿠폰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캐시백 (1인 1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캐시백 (1인 1만원 범위)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발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

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

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22.12.30.>

제8조(제한업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외 시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제10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제12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출자·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보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차고지의 대상인 '화물자동차'로 관련조문 정리

3. 주요내용

-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구분 란의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 을 '화물자동차' 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3년 3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227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2층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32) 560-4862 / FAX 032) 560-2734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치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 요금표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이 포함되어 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구분 란의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을 ‘화물자동차’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정기권	
	월	6개월
화물자동차	120,000원	720,000원

비고

1. 정기권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한다.
2. 공영차고지 이용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 8. 생략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 13.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1. 9. 24.>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 (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소 형	일 반 형			
승용 자 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전기자동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 00시시 미만 이고, 길이 3. 6미터·너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 00시시 미만 이고, 길이 4. 7미터·너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 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 는 것	배기량이 2,0 00시시 이상 이거나, 길 이·너비·높 이 모두 소형 을 초과하는 것
승합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승차정원이 1 5인 이하이	승차정원이 1 6인 이상 35	승차정원이 3 6인 이상이거

자동차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고,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인 이하이거나,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나,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5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승합 자동차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화물 자동차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이륜 자동차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

	쾌한 구조인 것
기 타 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9. 생략
- ②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 9. 9., 2007. 7. 1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플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

랜트	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쇠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향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6. 특수건설기계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7. 타워크레인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시설별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신규 준공예정인 체육시설을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및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용자와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후, 운영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의 각 체육시설별 조례를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 나. 서구주민이 타지역 주민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조)
- 다. 체육시설 입장제한 대상자 추가 (안 제9조)
- 라.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일 정비 (안 제10조)

- 마. 사용료를 현 운영실정에 맞게 조정 (안 제11조), (안 [별표3])
- 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수혜대상자 재정비 (안 제12조)
- 사. 사용료 반환규정 명확화,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 규정 (안 제13조)
- 아.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처분대상자의 사용제한 추가 (안 제15조)
- 자.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차. “수탁자 선정기준” 을 “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 으로 명확화 (안 제17조)
- 카.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안 제21조)
- 타. 준공예정 및 누락체육시설을 별표에 반영 (안 [별표 1], [별표3])
- 파.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오탈자정정, 불명확한 문구 명확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318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설별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신규 준공예정인 체육시설을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및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용자와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후, 운영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의 각 체육시설별 조례를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 나. 서구주민이 타지역 주민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조)
- 다. 체육시설 입장제한 대상자 추가 (안 제9조)
- 라.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일 정비 (안 제10조)
- 마. 사용료를 현 운영실정에 맞게 조정 (안 제11조), (안 [별표3])
- 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수혜대상자 재정비 (안 제12조)
- 사. 사용료 반환규정 명확화,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 규정 (안 제13조)
- 아.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처분대상자의 사용제한 추가 (안 제15조)
- 자.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차. “수탁자 선정기준”을 “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으로 명확화(안 제17조)
- 카.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안 제21조)

다. 준공예정 및 누락체육시설을 별표에 반영 (안 [별표 1], [별표3])

과.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오탈자정정, 불명확한 문구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을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용 사용자”라 함은”을 ““전용사용자”란”으로,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을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을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위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서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취된”을 “만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희롱자

5. 상거래 행위자

제10조의 제목 “(사용 시간)”을 “(사용 시간 및 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 06:00 ~ 22:00

2. 강습 프로그램 : 06:00 ~ 22:00

제12조제1항 중 “주관하는”을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헬스장”을 “헬스장, 체육관”으로,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50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용자에 한하여”를 “이용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4. 납부된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6.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으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수탁자 선정기준)”을“(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를 “민간위탁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대상자”를 “민간위탁수탁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수탁자의 의무)”를“(수탁자에 대한 권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별표 중 “공연장”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개정 이후 폐지한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은 운영자는 종전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운영자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체육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7	-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주민운동 시설, RC경기장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	- 배드민턴장
마전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5-,6,7	-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서구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25	- 휘트니스실, 문화교실,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청라복합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	- 수영장, 휘트니스룸
원당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5-1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체력증진교실, 운동처방실, 수영장
블로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789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활력테크
서구실내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24 (신현동 184-4, 원신근린공원내)	-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검암국궁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68-19	- 궁국장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 고	
- 서구국민체육센터 - 청라복합문화센터 - 원당·불로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1일 사용	2,000	3,000	5,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란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란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단체	1,500	2,500	4,000		
		월회원	28,000	33,000	42,000		
- 서구국민체육센터 - 원당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	1일 사용		2,000	3,000		
		월회원		25,000	35,000		
- 서구국민체육센터 - 원당·불로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		700	1,200	1,500	○ 1시간 기준	
- 서구국민체육센터 - 청라복합문화센터 - 원당·불로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체육프로그램	탁구등	30,000	35,000	4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 1회 1시간,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배드민턴	33,000			
			에어로빅	33,000			
		문화프로그램	4,000 범위 내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서구국민체육센터 - 원당·불로문화체육센터	대관료	체육관	80,000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마전케이트빌딩		다목적체육관	5,000			○ 1일 2시간 기준	
비고	<p>○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p> <p>1) 토요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p> <p>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p> <p>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구민</u>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인천광역시 서구민</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u>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u>자를</u></p>	<p>제2조(정의) ----- -----.</p> <p>1. -----<u>이란</u> ----- ----- ----- <u>이란</u> ----- -----.</p> <p>2. -----<u>이란</u> ----- -----.</p> <p>3. “<u>사용자</u>”란 ----- ----- <u>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u> ----- -----.</p> <p>4. “<u>전용사용자</u>”란 ----- ----- <u>사람</u></p>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 ④ (생략)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 ③ (생략)

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
-----.

5. “이용자”란 -----

-----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
-----.

6. “민간위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

----- 단, 서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 ③ (현

략)

④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술에 만취된 자

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

- 1. (현행과 같음)
- 2. --- 만취한 -----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제10조 (사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성희롱자

5. 상거래 행위자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 06:00 ~ 22:00
- 2. 강습 프로그램 : 06:00 ~ 22:00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헬스장, 체육관----- 한부모가족-----

----- 100분의50을 감면한다.

- 1. (생략)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4.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 6. (현행과 같음)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⑤ 수영장 이용자에 한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⑤ ----- 이용자 중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4. 납부된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② (생략)
- <신설>

<신설>

로 적용하여 반환

5.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
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
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
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6.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
---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
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⑥ (생략)

<신설>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7조(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

① 민간위탁수탁자-----
-----.

② ----- 민간위탁수탁자---

-----.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수탁자에 대한 권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별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행규칙들을 단일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사용허가(제2조), 회원모집(제3조), 강좌의 변경 및 폐강(제4조), 강사배치(제5조), 사용료의 반환(제6조), 출입증 발급(제7조), 발급대장 등 관리(제8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9조), 시설점검(제10조), 운영규정(제15조) 등 체육시설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나. 운영위탁 신청(제11조), 위탁계약(제12조), 위탁기간 연장(제13조), 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제14조)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318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별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행규칙들을 단일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사용허가(제2조), 회원모집(제3조), 강좌의 변경 및 폐강(제4조), 강사배치(제5조), 사용료의 반환(제6조), 출입증 발급(제7조), 발급대장 등 관리(제8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9조), 시설점검(제10조), 운영규정(제15조) 등 체육시설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 나. 운영위탁 신청(제11조), 위탁계약(제12조), 위탁기간 연장(제13조), 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제14조)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5조(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 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 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연장”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폐지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명 칭	구 분	사용시간	휴관일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체육시설	조 기 주 간 야 간	06:00 ~ 10:00	명절(설,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10:00 ~ 18:00	
마전게이트볼장		18:00 ~ 22:00	
서구국민체육센터	조 기 오 전 오 후 야 간	06:00 ~ 09:00	매주 일요일, 명절(설, 추석)연휴 정부 및 구청방침에 따른 휴일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날 ※ 수영장 : 토요일 06:00 ~ 17:00
청라복합문화센터		09:00 ~ 13:00	
원당문화체육센터		13:00 ~ 18:00	
블로문화체육센터		18:00 ~ 22:00	
서구실내게이트볼장	조 기 주 간 야 간	06:00 ~ 09:00 09:00 ~ 18:00 18:00 ~ 22:00	매주 월요일, 명절(설, 추석)전일, 당일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주말, 공휴일 : 07:00 ~ 21:00
검암국공장	조 기 오 전 오 후 야 간	06:00 ~ 09:00 09:00 ~ 13:00 13:00 ~ 18:00 18:00 ~ 22:00	연중무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제2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사용목적	목 적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일간)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변 경 사 항 (변경허가 신청시)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시설사용 취하서(제2조제5항 관련)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환불계좌					
시설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행사내용					
사용기간	사용취하 대관기간				(시간) (일)	
					(시간) (일)	

상기 본인은 위의 체육관 사용을 ()으로 인하여 대관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 귀하

회원권 발급대장(제8조제3호 관련)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강좌명	발행일 (회수일)	유효기간	수강료	비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19호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상징물 종류(안 제1조~제3조)
- 구기, 문장, 휘장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상징물의 관리, 변경 및 사용(안 제7조~제9조)
- 상징물 관련 사업 및 공모전(안 제10조~제11조)
-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안 제12조~제13조)
- 상징물 사용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홍보정책담당관)에게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본관 3층 홍보정책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32-560-4143 (FAX) 032-560-2709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상징물 종류(안 제1조~제3조)
- 나. 구기, 문장, 휘장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상징물의 관리, 변경 및 사용(안 제7조~제9조)
- 라. 상징물 관련 사업 및 공모전(안 제10조~제11조)
- 마.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안 제12조~제13조)
- 바. 상징물 사용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휘장, 구민의 노래, 나무, 동물, 꽃, 새, 사업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문장: 별표 3
5. 휘장: 별표 3
6. 구민의 노래: 별표 4
7. 나무: 은행나무
8. 동물: 사슴
9. 꽃: 국화
10. 새: 까치
11. 사업 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구기) ① 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회장)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기·문장·휘장·구민의 노래·나무·동물·꽃·새: 총무과
2.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정책담당관
3. 사업 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사용) ①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 1) 서구의 상징물인 까치와 인천의 어질 仁을 모티브로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함
- 2) 서곶과 검단 두 고을의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함으로써 선진 서구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상 표현
- 3)  는 서구 주민의 화합과 푸르른 자연환경, 깨끗한 주거환경을 의미
- 4)  는 위와 같은 바탕 위에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며 비상하는 모습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서구의 힘찬 기상 표현

2. 로고타입

- 1) 국문형

인천광역시 서구

- 2) 영문형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 3) 국영문혼용형

인천광역시 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3. 브랜드 시그니처

- 1) 국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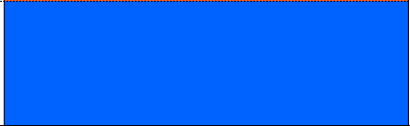
- 2) 영문형



- 3) 국영문혼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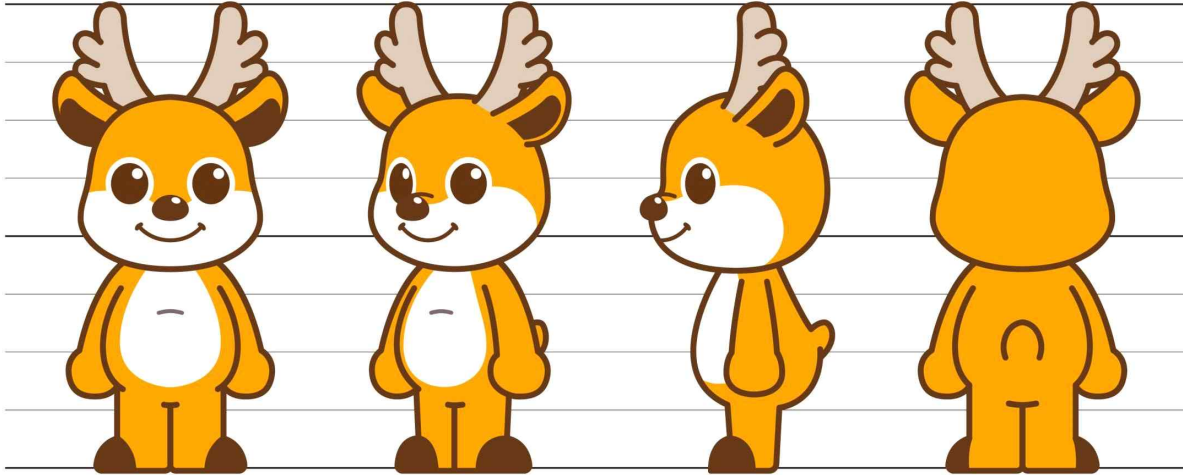


4. 전용색상

<p>서구 그린 (Seogu Green)</p>		<p>R0 G162 B0 C78 M15 Y100 K0</p>
<p>서구 오렌지 (Seogu Orange)</p>		<p>R255 G96 B31 C0 M76 Y85 K0</p>
<p>서구 블루 (Seogu Blue)</p>		<p>R0 G98 B255 C84 M61 Y0 K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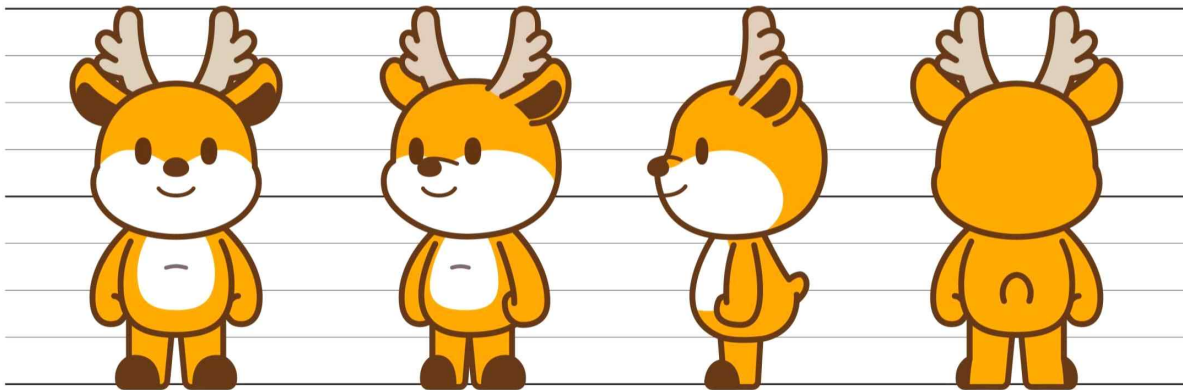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

1. 서동이



PANTONE 482 C	PANTONE 137 C	PANTONE 1545 C
HTML #DBC8B6	HTML #FFA400	HTML #653818
RGB 219 200 182	RGB 255 164 0	RGB 101 56 24
CMYK 8 17 20 0	CMYK 0 36 100 0	CMYK 0 68 100 67

2. 동동이



PANTONE 482 C	PANTONE 137 C	PANTONE 1545 C
HTML #DBC8B6	HTML #FFA400	HTML #653818
RGB 219 200 182	RGB 255 164 0	RGB 101 56 24
CMYK 8 17 20 0	CMYK 0 36 100 0	CMYK 0 68 100 67

- 평화와 인내, 사랑을 상징하는 사슴을 형상화한 캐릭터인 서동이는 서구 곳곳에서 서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고, 말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 2021년 기존 서동이 디자인을 리뉴얼하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겨냥하여 동생 '동동이'를 추가했다.

구기, 문장(철인), 휘장(제3조 제3호 ~ 제5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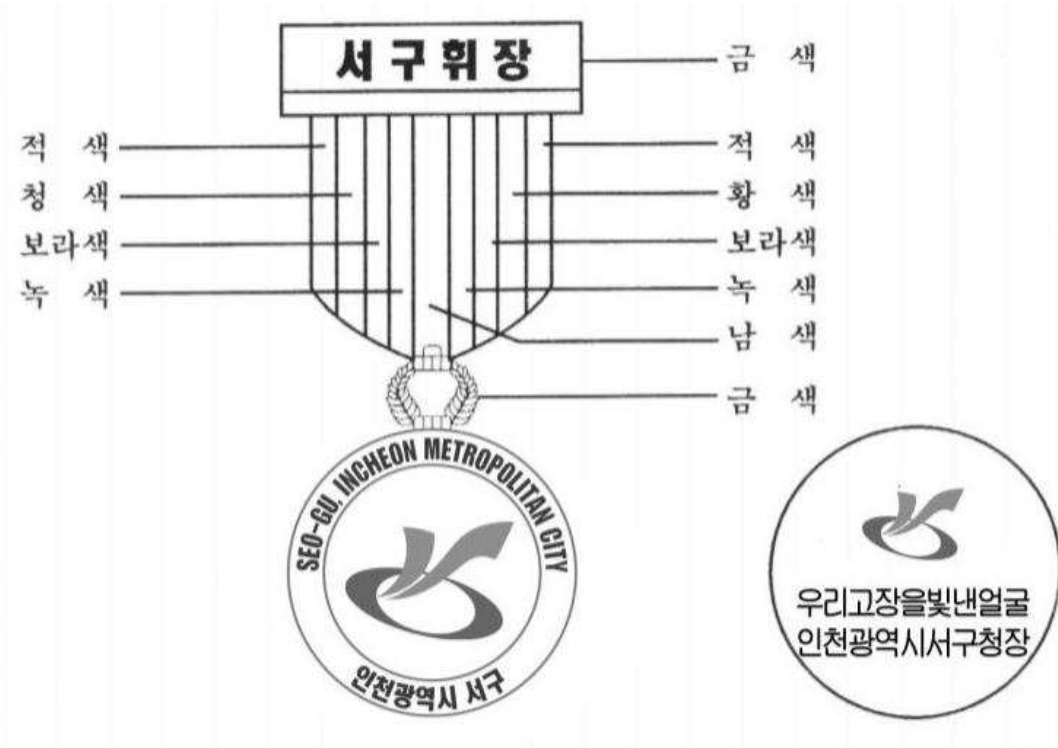
1. 구기



2. 문장(철인)



3.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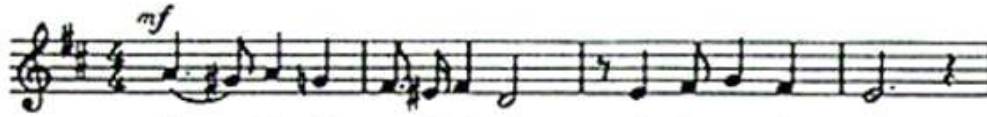


구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구민의 노래

Moderato(경쾌하게)

조선희 작사
윤영진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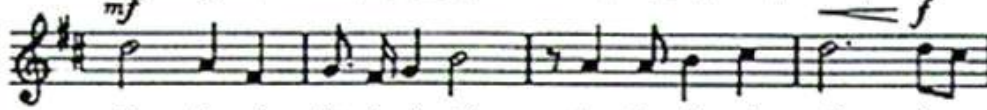
1. 원 - 적 산 구 비마 다 치 솟 는 정 기
 2. 새 - 립 계 설 계하 는 내 일 이 있 어
 3. 조 - 상 의 얼 이있 어 전 붕 을 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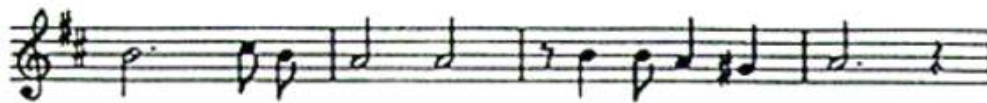
높 - 다 란 하 늘 위 에 풍 요 를 열 고
 누 - 리 엔 동 이트 는 아 침 을 열 고
 어 - 른 의 맥 을 따 라 가 혼 을 심 고



서 - 해 의 힘 찬슬 기 야 망 을 - 퍼 는
 이 - 마을 저 사 람 이 한 데 어 - 울 려
 태 - 양 이 타 오 르 는 후 손 만 - 대 에



축 복 이 뿌 리 내 린 눈 부 신 터 전 아-
 즐 거 이 도 와 가 며 한 마 음 되 네 아-
 알 뜰 한 손 길 타 고 행 복 이 오 네 아-



아 우리 서 구 회 망 의 낙 원
 아 우리 서 구 사 랑 의 가 족
 아 우리 서 구 약 진 의 고 장



가 꾸 이 빛 내 가 며 다 저 나 가 세
 손 잡 아 이 깨 질 며 퍼 저 나 가 세
 대 망 의 불 밝 혀 서 키 워 나 가 세

회장 수여대장(제6조제2항 관련)

번호	수여일자	수 여 자 인 적 사 항		수 여 사 유	비고
		주 소	성명(단체명)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기관단체·회사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p>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제12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기관단체·회사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료		
<p>「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인천광역시 서구청장</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구복지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조 ~ 제3조)
-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8조)
- 기본재산의 조성·운영재원과 출연금 교부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수익사업, 기금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2조)

-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4조)
-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설립·운영 관련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을 정함(안 제18조)
-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 전화 560-4291, 팩스 560-27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구복지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조 ~ 제3조)
-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다.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8조)
- 라. 기본재산의 조성·운영재원과 출연금 교부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마. 수익사업, 기금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2조)
- 바.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4조)
- 사.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6조)
- 아.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자. 설립·운영 관련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을 정함(안 제18조)
- 차.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반영

- 2023년 추경예산편성 시 초기 설치비(2억원) 반영예정
-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금 및 운영비(27.9억원) 반영예정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배분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3.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
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의 수탁운영
6. 복지사각지대(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발굴 및 지원 관련사항

7.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의결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거나 구청장으로 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⑤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 ② 상임이사는 재단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교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재단은 구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준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예산의 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24호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 수수료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폐지이유

-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를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불필요한 규칙이므로 폐지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032-560-4722, FAX 032-560-27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 폐지(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 수수료지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를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불필요한 규칙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별도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
수수료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0. 7. 4.,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12. 12., 2013. 3. 23., 2014. 10. 15.>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02-22><개정 2021.7.16.>

② <삭제 2010-06-30>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매 월 또는 분기별로 일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2-22>